

1.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

「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」 개정(4.28. 시행)으로 기존에 직제로 규정하고 있던 본부 국장을 보좌하는 정책관 등 보좌기관의 명칭과 소관업무를 직제 시행규칙으로 규정하게 됨에 따라 시장구조개선정책관 및 유통정책관의 명칭과 소관업무를 규정하고, 조사권 관련 이슈의 체계적 대응 및 조사역량 강화를 위해 조사제도 운용 업무를 심판총괄담당관에서 디지털조사분석과로 이관하고, 「2020년 중앙부처 총액인건비제 세부 운영지침」 개정내용을 반영하고,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에 총액인건비팀인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가맹유통팀을 신설하고, 소비자분야 민원처리 전담인력으로서 임기제공무원 채용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총리령 제 호

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3항제17호를 삭제한다.

제9조제1항 중 “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하고, 시장구조개선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, 그 직위의 직무등급”을 “직무등급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10항까지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직제 제12조제1항에 따라 경쟁정책국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시장구조개선정책관으로 하며,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.

③ 시장구조개선정책관은 직제 제12조제3항제12호부터 제16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경쟁정책국장을 보좌한다.

제9조제7항(중전의 제5항)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10항(중전의 제8항)제7호 중 “제7조제5항제6호”를 “제7조제4항제26호”로 한다.

6. 위원회 소관 사건의 조사 관련 법령과 내부규정의 제정·개정 등

조사 제도의 운용

제13조제1항 중 “기업거래정책국장 및 유통정책관”을 “기업거래정책국장”으로, “그 직위의 직무등급”을 “직무등급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12항까지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직제 제16조제1항에 따라 기업거래정책국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유통정책관으로 하며,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.

③ 유통정책관은 직제 제16조제3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2호부터 제15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.

제14조제2항 본문 중 “총괄과·경쟁과·소비자과·건설하도급과 및 제조하도급과를”을 “총괄과·경쟁과·소비자과·건설하도급과·제조하도급과 및 가맹유통팀을”로, “경쟁과장·소비자과장·건설하도급과장 및 제조하도급과장”을 “경쟁과장·소비자과장·건설하도급과장·제조하도급과장 및 가맹유통팀장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제3호,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삭제하며,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⑧ 가맹유통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

1. 「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위반사항에 대한 조사·시정조치·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
2. 「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위반사항에 대한 조사·시정조치·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

3. 「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위반사항의 조사·시정조치·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

제17조제1항 단서 및 제2항 단서 중 “5퍼센트”를 각각 “7퍼센트”로 하고,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⑤ 지방공정거래사무소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소비자 관련 법령 소관 민원처리 업무를 담당하는 7명(8급 7명)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.

별표 2의2 행정서기 “23”을 “22”로 하고, 행정서기보 “3”을 “4”로 한다.

별표 3의2 행정서기 “12”를 “11”로 하고, 행정서기보 “3”을 “4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총액인건비제로 하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간) 이 규칙 시행으로 조정되는 행정서기보 2명은 2023년 00월 00일까지 존속하며, 2023년 00월 00일 이후에는 그 조정된 정원은 행정서기 2명으로 본다.

제3조(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간) ① 「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」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

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가맹유통팀은 2023년 00월 00일까지 존속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간까지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가맹유통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간이 지난 날부터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가맹유통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경쟁과장이 분장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6조(심판관리관) ①·② (생략)	제6조(심판관리관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③ 심판총괄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심판관리관을 보좌한다.	③ ----- -----.
1. ~ 16. (생략)	1. ~ 16. (현행과 같음)
17. <u>위원회 소관 사건의 조사</u> <u>관련 법령과 내부규정의 제정</u> <u>· 개정 등 조사 제도의 운용</u>	<u><삭 제></u>
18. ~ 20. (생략)	18. ~ 20. (현행과 같음)
④ ~ ⑦ (생략)	④ ~ ⑦ (현행과 같음)
제9조(경쟁정책국) ① 경쟁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,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하고, <u>시장구조개선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하되,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.</u>	제9조(경쟁정책국) ① ----- ----- ----- <u>직무등급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<u><신 설></u>	② 직제 제12조제1항에 따라 경쟁정책국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<u>시장구조개선정책관으로 하며,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직</u>

<u><신 설></u>	<u>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.</u>
	<u>③ 시장구조개선정책관은 직제 제12조제3항제12호부터 제16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경쟁정책 국장을 보좌한다.</u>
<u>② ~ ④ (생 략)</u>	<u>④ ~ ⑥ (현행 제2항부터 제4항까지와 같음)</u>
<u>⑤ 디지털조사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</u>	<u>⑦ -----</u> <u>-----.</u>
<u>1. ~ 5. (생 략)</u>	<u>1. ~ 5. (현행과 같음)</u>
<u><신 설></u>	<u>6. 위원회 소관 사건의 조사 관련 법령과 내부규정의 제정 · 개정 등 조사 제도의 운용</u>
<u>⑥ · ⑦ (생 략)</u>	<u>⑧ · ⑨ (현행 제6항 및 제7항과 같음)</u>
<u>⑧ 경제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</u>	<u>⑩ -----</u> <u>---</u>
<u>1. ~ 6. (생 략)</u>	<u>1. ~ 6. (현행과 같음)</u>
<u>7. 제7조제5항제6호에 따른 경쟁 관련 영향의 경제분석 지원</u>	<u>7. 제7조제4항제26호-----</u> <u>-----</u>
<u>8. · 9. (생 략)</u>	<u>8. · 9. (현행과 같음)</u>
<u>제13조(기업거래정책국) ① 기업거래정책국장 및 유통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하되, 그 직위의</u>	<u>제13조(기업거래정책국) ① 기업거래정책국장-----</u> <u>-----</u> <u>----- 직무등급-----</u>

<u>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.</u>	<u>-----.</u>
<u><신 설></u>	<u>② 직제 제16조제1항에 따라 기업거래정책국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유통정책관으로 하며,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.</u>
<u><신 설></u>	<u>③ 유통정책관은 직제 제16조제3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2호부터 제15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.</u>
<u>② ~ ⑩ (생 략)</u>	<u>④ ~ ⑫ (현행 제2항부터 제10항까지와 같음)</u>
<u>제14조(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)</u>	<u>제14조(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)</u>
<u>① (생 략)</u>	<u>① (현행과 같음)</u>
<u>②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에 총괄과 · 경쟁과 · 소비자과 · 건설하도급과 및 제조하도급과를 두되, 총괄과장은 서기관으로, 경쟁과장 · 소비자과장 · 건설하도급과장 및 제조하도급과장은 서기관 · 기술서기관 · 행정사무관 · 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보한다. 다만, 총괄과장은 「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」 제27조제2항에 따</u>	<u>② ----- 총괄과 · 경쟁과 · 소비자과 · 건설하도급과 · 제조하도급과 및 가맹유통팀을 ----- 경쟁과장 · 소비자과장 · 건설하도급과장 · 제조하도급과장 및 가맹유통팀장-----</u> <u>-----</u> <u>---. -----</u> <u>-----</u> <u>-----</u>

라 상호이체하여 배정·운영하는 부이사관·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할 수 있다.	----- -----.
③ (생략)	③ (현행과 같음)
④ 경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	④ ----- -.
1.·2. (생략)	1.·2. (현행과 같음)
3. 「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위반사항에 대한 조사·시정조치·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	<삭제>
4.·5. (생략)	4.·5. (현행과 같음)
6. 「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위반사항에 대한 조사·시정조치·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	<삭제>
7. 「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위반사항의 조사·시정조치·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	<삭제>
⑤ ~ ⑦ (생략)	⑤ ~ ⑦ (현행과 같음)
<신설>	⑧ 가맹유통업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
	1. 「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위반사항에 대한 조사·시정조치·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

	과 및 이행 확인
	2. 「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위반사항에 대한 조사·시정조치·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
	3. 「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위반사항의 조사·시정조치·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
제17조(공정거래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) ① 공정거래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. 다만, 「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」 제22조제1항단서에 따라, 별표 2에 따른 총정원의 5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의2와 같으며, 별표 2의2의 정원 중 2명(행정서기보 2명)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.	제17조(공정거래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) ① ----- ----- -----. ----- ----- ----- - 7퍼센트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② 지방공정거래사무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. 다만, 「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」 제23조제1	② ----- -----. ----- -----

항단서에 따라, 별표 3에 따른 총정원의 <u>5퍼센트</u> 를 넘지 아니 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 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3의 2와 같다.	----- <u>7퍼센트</u> ----- ----- ----- -----.
③·④ (생략) <u><신설></u>	③·④ (현행과 같음) ⑤ 지방공정거래사무소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소비자 관련 법 령 소관 민원처리 업무를 담당 하는 7명(8급 7명)은 임기제공 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.

신·구정원대비표

■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[별표 2의2]
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 정원표(제17조제1항 단서 관련)

직	급	별	현행	개정안	증감
	.		.	.	
	.		.	.	
행정서기			<u>23</u>	<u>22</u>	-1
	.		.	.	
행정서기보			<u>3</u>	<u>4</u>	+1
	.		.	.	
	.		.	.	

■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[별표 3의2]

지방공정거래사무소 공무원 정원표(제17조제2항 단서 관련)

직 급 별	현 행	개정안	증 감
•	•	•	
•	•	•	
행정서기	<u>12</u>	<u>11</u>	-1
행정서기보	<u>3</u>	<u>4</u>	+1
•	•	•	
•	•	•	